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9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재생에너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문대림의원안)	2

I. 개요

1.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29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8. 28.
- (3) 회 부 일 : 2024. 8.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3%~25%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규정이 미비함.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달성을 위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 8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재생에너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문대림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u>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8 신설)</u> ○ 공제대상: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비용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비용 ○ 공제율: 30% ○ 적용기한: 2029. 12. 31.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적용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투자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문대림의원안 2024. 8. 28. 발의(의안번호 3292)

☐ 개정안은 탄소중립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20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용의 30%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을 의미함.¹⁾ 재생에너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중립 달성을 이끄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탄소중립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간활동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광범위한 공감대와 합의를 기초로 한 국제규범이 되었음.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는 전 지구 평균 지표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pre-industrial)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핵심 목표를 설정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2023년 6월 기준, 총 142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탄소중립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최상위 과제로 급부상하였음.

우리나라도 2020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시행 2022. 3. 25.)하였으

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며, 이를 기반으로 2023년에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을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7,780GWh이며, 발전비율은 2022년 기준 9.22%로 2017년 발전비율 8.18% 대비 1.04%p 증가하였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비율]

(단위: GWh,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발전량	578,014	594,609	589,200	579,999	611,015	626,448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47,306	53,688	52,341	43,124	50,657	57,780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8.18	9.03	8.88	7.44	8.29	9.22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2022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0,405GWh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발전량 중 8.05%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의 발전량이 1위이고, 바이오가 2위, 수력이 3위임.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단위: GWh,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재생에너지 발전량	21,014	26,202	30,909	37,202	43,668	50,405
태양광	7,739	10,167	14,192	19,337	24,717	30,726
풍력	2,169	2,464	2,679	3,149	3,180	3,369
수력	2,819	3,374	2,791	3,879	3,057	3,544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해양	489	485	474	457	454	423
	바이오	7,466	9,363	10,415	9,938	11,788	11,927
	재생폐기물	330	347	356	439	470	413
총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3.64	4.41	5.25	6.41	7.15	8.05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기업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와 사용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시설투자와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제조기업 300 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022년)를 한 결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는 RE100 참여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용 부담’(35.0%)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비용인데,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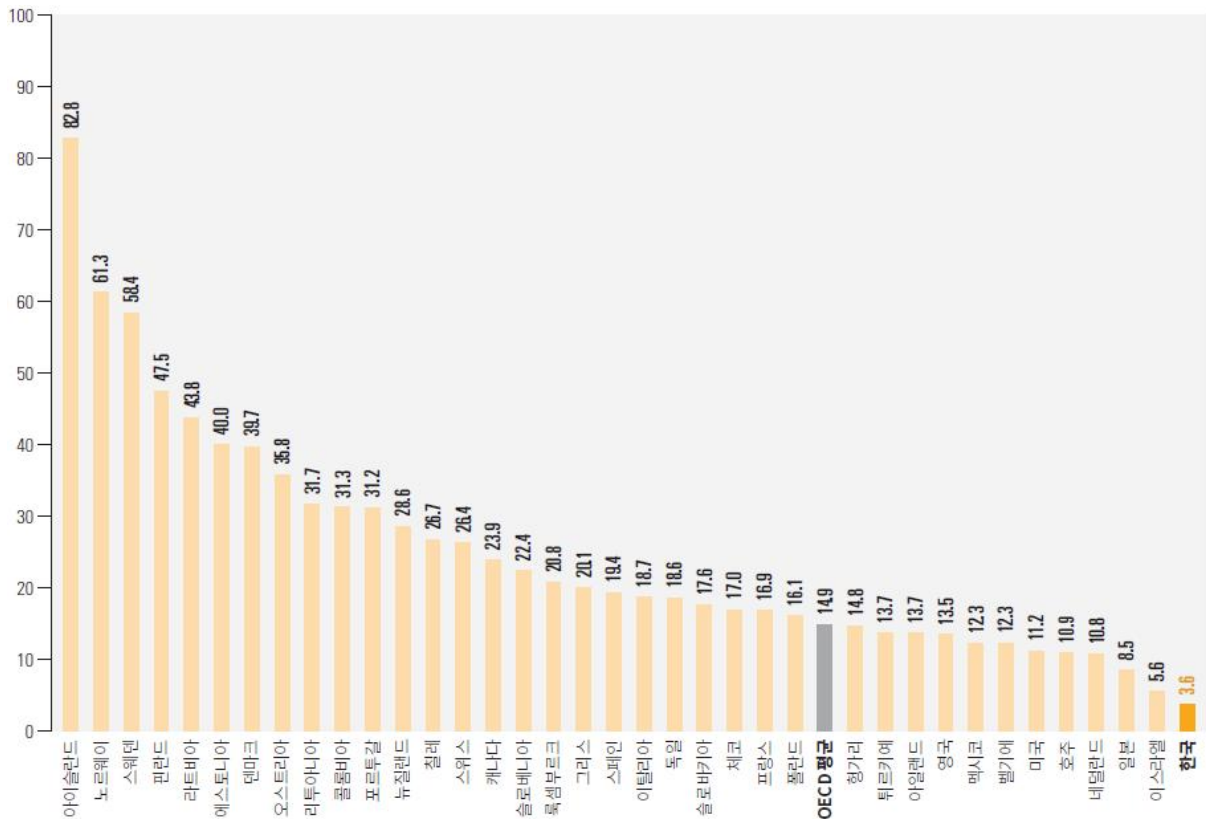
둘째, 기업의 재생에너지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재생에너지 소비율을 높여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그간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확대되었으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아직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낮은 수준임.

2020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비율은 OECD 평균이

14.9%인데, 우리나라는 3.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음.

[OECD 국가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2020]



자료: 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소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및 사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가 전체 차원의 재생에너지 소비를 확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유형을 신설하는 것은 통합 투자세액공제(법 제24조)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존에 존재하던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 특

정시설 투자세액공제²⁾,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동일하게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음.

그런데 별도로 재생에너지 시설투자에 대해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를 만드는 것은 투자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체계와는 방향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둘째,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국가안보 등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율(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보다 더 높은 공제율인 30%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셋째, 개정안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액공제율 30%를 적용하는 것인데,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대기업은 1%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중견기업은 5%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1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넷째, 현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³⁾되

2)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안전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등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음.

어 있어 R&D 세액공제(법 제10조)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 R&D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화시설에 세제지원
 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⁴⁾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13. 탄소중립

다. 신재생에너지

- 1)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 · 스택 · 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 2) 삭제
 - 3)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 4)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페로브스카이트 · 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전지 핵심소재 제조 및 대면적화 기술
 -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 7) 풍력발전 블레이드 기술
 - 8)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 9) 지열발전기술
 - 10)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 11) 폐기물 액화 · 가스화 기술
 - 12) 미활용 폐열 회수 · 활용을 통한 발전 기술
 - 13)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 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
 - 14) 고효율 n형 대면적 태양전지와 이를 집적한 모듈화 기술
- 4)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행하는 「금융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임.